

삼척지역 적대세력에 의한 피해 사건(2)

【결정사안】

1950. 9. 말경 진실규명대상자 김수원이 인민군에게 강제연행 된 사실을 확인하여 진실규명하고 진실규명대상자 박근식의 희생 사실은 확인할 수 없어 진실규명불능으로 결정한 사례.

【결정요지】

1. 본 위원회의 제118차 전원위원회(2009. 12. 15.)에서 의결된 「강원 영동지역 적대세력사건(고성, 강릉, 양양, 삼척, 울진)」에 포함되지 않은 삼척지역 적대세력 사건 2건 중 피해자의 신원, 강제연행 시기와 장소 및 이유 등 사건경위가 밝혀진 진실규명대상자 김수원의 강제연행 사실을 확인하였다.

2. 그러나 진실규명대상자 박근식은 희생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참고인 및 한국전쟁 관련 명부 등의 자료에서 피해 내용을 찾을 수 없어 희생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다.

【전 문】

【사 건】 마-6838(3) 등 2건, 삼척지역 적대세력에 의한 피해사건(2)

【신청인】 강태용 등 4명

【결정일】 2010. 6. 15.

【주 문】

- 사건번호 마-6838(3)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진실이 규명되었으므로 ‘진실규명’으로 결정한다.

- 사건번호 마-10506(2)에 대하여 진실규명이 불가능하므로 ‘진실규명불능’으로 결정한다.

【이 유】

I. 조사개요

1. 사건개요

가. 사건접수 및 처리과정

신청인 강태용 등과 윤순희는 2006. 11. 15.과 2006. 11. 30.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 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원회’)에 강원도 삼척지역에서¹⁾ 발생한 민간인 피해사건에 대해 진실규명을 신청하였다.²⁾

본 사건은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으로 분류되어 제24차(2007. 1. 9.), 제25차(2007. 1. 23.) 집단희생규명위원회에서 조사개시되었으나 사건 조사 중 본 사건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제1항제5호의 조사범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어 적대세력에 의한 피해사건으로 재분류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³⁾

조사개시 결정시 사건명은 사건발생지역, 진실규명대상자의 이름, 사건유형(희생·강제연행) 등을 반영한 조사결과 사건명으로 수정하였다.

〈표 1〉은 진실규명 신청 접수 현황 및 조사결과 사건명을 정리한 것이다.

〈표 1〉 진실규명신청서 접수 현황 및 조사결과 사건명

연번	사건번호	접수일자	신청인 (성별, 당시 나이)	조사개시 결정시 사건명	진실규명대상자			조사결과 사건명	비고
					성명	성별 (당시 나이)	신청인 과의 관계		
1	마-6838(3)	2006. 11.15.	강태용 (姜泰鎔, 남, 12세) 김일하 (金一河, 남, 20세) 이경일 (李景日, 남, 1963년생)	부역혐의 민간인 집단희생사건	김수원 (金守源)	남 (21세)	마을 주민	삼척군 원덕면 용화리 김수원 강제연행사건	
2	마-10506(2)	2006. 11.30.	윤순희 (尹順熙, 여, 6세)	중부지역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	박근식 (朴根植)	남 (39세)	마을 주민	삼척군 죽서루 박근식 희생사건	

- 1) 본 결정서에 기재된 시·군과 읍·면 등 지명은 사건발생 당시를 기준으로 하였다.
- 2) 진실화해위원회는 강원 영동지역(고성, 강릉, 양양, 삼척, 울진)에서 발생한 적대세력 사건에 대해 의결한 바 있다. 진실화해위원회, 『강원 영동지역 적대세력사건』, 제118차 전원위원회 (2009. 12. 15.)
- 3) 진실규명대상자 김수원과 박근식은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 관련 신청사건인 다-6838와 다-10506의 진실규명대상자 중 1명이었으나 조사과정에서 가해자가 적대세력으로 판단되었다. 이에 사건을 분리하고 적대세력사건의 분류기호인 ‘마’와 분리번호를 적시하여 마-6838(3), 마-10506(2)의 사건번호를 부여하였다. 진실화해위원회(조사1팀-365), 『조사개시 사건 분리 및 사건번호 재배정(다-6838·다-10506)』, 2010. 4. 28.; 진실화해위원회(조사1팀-443, 『사건번호 재배정(마-6838·마-10506)』, 2010. 5. 31.

나. 신청내용

신청인 강태용 등과 윤순희는 한국전쟁 전후 시기 강원도 삼척지역에서 적대세력에 의한 피해사건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신청사건에 대한 진실규명과 진실규명대상자들에 대한 명예회복을 요청하였다.

신청인들이 제출한 진실규명신청서와 진술조서의 주요 내용은 <표 2>와 같다.

<표 2> 신청인 명단 및 주요 진술내용

연번	사건번호	조사결과 사건명	신청인 (성별, 당시 나이)	사건인지 과정	주요 진술내용
1	마-6838(3)	삼척군 원덕면 용화리 김수원 강제연행 사건	강태용 (남, 12세) 김일하 (남, 20세) 이경일 (남, 1963년 출생)	전문 (마을주민)	인민군 퇴각 무렵, 삼척군 원덕면 용화리에 거주하던 진실규명대상자 김수원이 인민군에게 짐꾼으로 끌려갔음.
2	마-10506(2)	삼척군 죽서루 박근식 희생사건	윤순희 (여, 6세)	전문 (어머니)	1950. 3.경 삼척군 상장면 혈리에 거주하던 진실규명대상자 박근식이 빨치산의 집을 들어다 달라는 요구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삼척군 죽서루에서 빨치산에게 희생당했음.

2. 조사의 근거와 목적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진실규명의 범위) 제1항제5호는 “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 시까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거나 대한민국을 적대시하는 세력에 의한 테러·인권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에 대하여 진실규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진실화해위원회는 삼척지역에서 발생한 적대세력에 의한 피해사건이 진실규명의 범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되어 사건의 발생시기·장소 및 피해자 수, 진실규명대상자의 피해사실 여부 등을 규명하고자 조사를 실시하였다.

3. 규명과제

본 사건의 진실규명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건의 발생시기 및 장소를 규명한다.

제 2 권

- 둘째, 진실규명대상자의 피해사실 여부를 규명한다.
- 셋째, 사건의 가해주체 및 피해이유를 규명한다.

4. 조사방법

사건조사를 위해 관련 문헌자료를 조사했으며, 신청인 2명과 참고인 2명에 대한 진술 조사를 실시하였다.

가. 문헌자료 조사

한국전쟁 관련 피해자가 등재되어 있는 각종 명부와 미(美)전쟁범죄 조사단 보고서(이하, KWC)⁴⁾를 검토하였다.

진실규명대상자의 피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6.25사변 피살자 명부』(공보처 통계국, 1952)⁵⁾, 『6.25사변 피납치자 명부』(공보처 통계국, 1952)⁶⁾, 『6.25동란으로 인한 피납치자 명부』(내무부 치안국, 1954)⁷⁾, 『월북자 명단』(공보처 통계국, 1951)⁸⁾, 『순국 반공 청년 운동 유공자 관계 서류록』⁹⁾(이하 ‘순국반공청년운동명부’), 『거제포로수용소 DB』¹⁰⁾ 등 각종 명부를 검토하였으나 진실규명대상자의 이름이 등재되어 있지 않았으며 KWC에도

-
- 4) NARA(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RG 153(Office of the Judge Advocate General Army, International Affairs Division: War Crimes Branch: Investigation of Atrocities Against POWs in Korea)
 - 5) 『6.25사변 피살자 명부』에는 희생자의 성명, 성별, 연령, 직업, 피해연월일, 피해 장소, 본적, 주소 등 8개 항목이 기재되어 있다. 한국전쟁 중 인민군과 좌익에게 희생된 민간인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작성된 문서로 통계국장을 비롯한 9명이 명부작성에 참여하였고, 이들이 만든 양식을 지방 행정계통을 통해 조사하도록 했다. 2003년 월간조선사에서는 『6.25 피살자 59994명』을 펴냈다. 이 자료를 통해서 『6.25사변 피살자 명부』(공보처 통계국, 1952)에서 누락된 희생자를 파악할 수 있었다.
 - 6) 『6.25사변 피납치자 명부』에는 피납자의 성명, 성별, 연령, 직업, 소속, 납치연월일, 납치장소, 주소 등 8개 항목이 기재되어 있다. 이 명부에는 82,959명의 피납자가 등재되어 있다.
 - 7) 『6.25동란으로 인한 피납치자 명부』에는 피납자의 성명, 성별, 연령, 직업, 소속, 납치 연월일, 납치장소, 주소 등 8개 항목이 기재되어 있다. 이 명부에는 17,940명이 등재되어 있다.
 - 8) 『월북자 명단』에는 월북자의 성명, 성별, 연령, 직업, 월북연월일, 경력, 당력, 주소, 본적 등 9개 항목이 기재되어 있다. 국가기록원에 마이크로필름으로 보관되어 있으며 10,290명이 등재되어 있다.
 - 9) 『순국 반공 청년운동 유공자 관계 서류록』에는 반공 청년단체에서 활동하다 희생당한 민간인들이 기재되어 있다. 1948년 이후로는 대한청년단, 1948년 이전에는 전국청년총연맹, 국민회청년단, 민주청년동맹, 광복청년회, 독립청년단, 서북청년단, 대동청년단 등에서 활동한 민간인에 대한 기록이다. 이 명부는 희생자의 성명, 생년월일, 소속, 희생연월일, 희생장소, 명부신청인, 신청인과의 관계, 주소 등 8개 항목으로 되어 있다.
 - 10)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http://www.imhc.mil.kr>>, 『거제포로수용소 DB』에는 수용자의 포로번호, 성명, 계급, 처리상태, 처리일자, 생년월일, 부친 성명, 통지자 주소 등 8개 항목이 영문으로 기재되어 있다.

진실규명대상자의 피해사실 관련 내용이 언급되어 있지 않음을 확인하였다.¹¹⁾

나. 참고인 진술조사

참고인 진술조사를 통해 사건의 실재 여부, 진실규명대상자의 피해사실여부 등을 확인하였다. 신청인이 추천한 참고인을 비롯하여 사건발생 당시 해당 지역에 거주한 자 중 그 내용을 알고 있는 참고인을 선별하여 진술조사를 실시하였다.

〈표 3〉 참고인 주요 진술내용

사건명 (사건번호, 진실규명대상자)	참고인					주요 진술내용
	성명 (성별, 당시 나이)	당시 거주지	사건인지 과정	진실규명 대상자와 의 관계	진술 형태 (진술일)	
삼척군 원덕면 용화리 김수원 강제연행 사건 (마-6838(3), 김수원)	김○○ (남, 14세)	삼척군 원덕면 용화리	전문 (가족)	동생	진술조서 (2010.1.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적 사항: 농업. 사건시기: 1950. 10. 초경 사건내용: 인민군 패잔병 1개 사단이 (만명부대라 불림) 마을을 지나갈 때 짐꾼으로 끌려갔음. 가해자: 인민군 기타: 일제강점기에 김수원의 부친 이 청진으로 고기를 잡으러 갔다가 돌아 오지 않자 김수원이 갈남리에 거주하던 자와 함께 부친을 찾으러 원산에 가 아버지를 만나고 돌아온 바 있음. 아버지는 일을 마치고 돌아온다고 하였으나 해방이 되어 돌아오지 못함.
	김○○ (남, 20세)	삼척군 원덕면 용화리	전문 (마을주민)	마을주민	진술녹취 (2010.5.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적사항: 22세, 용화리 거주, 농업 사건시기: 인민군 퇴각기 사건내용: 인민군 패잔병들이 마을에 들어와 젊은이들을 데리고 가려고 하자 이웃집 소 사료 저장하는 곳(일명 꼬치가리)에 숨어 있다가 인민군에게 발각되어 연행되어 감. 피해이유: 인민군이 일을 시키기 위해 데려 갔을 것임. 가해자: 인민군 기타: 김수원의 아버지는 전쟁 전에 북한지역으로 고기를 잡으러 갔다가 돌아오지 않음.

11) KWC #395. 삼척 인근에서 발생한 민간인 4명에 대한 희생사건이 언급되어 있으나 1951. 2. 1.경 발생한 사건으로 본 신청건과는 관련 없음을 확인하였다.

II. 조사결과

1. 사건내용

가. 삼척군 원덕면 용화리 김수원 강제연행사건(마-6838(3), 1950. 9. 말경)

진실규명대상자 김수원(金守源, 남, 21세)은 삼척군 원덕면 용화리에 거주하며 농업에 종사하였다.

김수원은 인민군 퇴각기에 인민군 패잔병들이 마을 젊은이들을 일꾼으로 데리고 간다는 말이 돌자 옆집에 있는 소사료를 저장하는 곳간(일명 꼬치까리)에 숨어 있던 중 인민군에게 발각되어 끌려갔다.¹²⁾

참고인들이 1950. 10. 초순이나 인민군 퇴각기에 사건이 발생하였다고 진술하였고, 3사단이 9. 22.~30. 포항-영덕-울진-삼척-강릉으로 진격할 정황 등을 고려하여¹³⁾ 최종적으로 사건발생시기를 1950. 9. 말경으로 판단하였다.

『6.25사변 피살자 명부』, 『6.25사변 피납치자 명부』, 『6.25동란으로 인한 피납치자 명부』, 『월북자 명단』, 『순국반공청년운동명부』, 『거제포로수용소 DB』 등 한국전쟁 관련 명부에서 그의 피해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으나 참고인들의 진술에서 김수원이 인민군에게 강제연행 당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나. 삼척군 죽서루 박근식 희생사건(마-10506(2), 1950. 3.경)

진실규명대상자 박근식(朴根植, 남, 39세)은 삼척군 상장면 혈리에 거주하며 교직에 재직 중이었다고 한다.¹⁴⁾ 신청인은 그가 1950. 3.경 인근 큰 연재기골로 집을 지어다 달라는 빨치산의 지시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삼척군 죽서루로 끌려가 빨치산에게 희생당했다고 진술하였다.¹⁵⁾ 당시 혈리에 빨치산이 자주 출몰하여 마을주민들에게 곡식 등의 집을 나르게 했다는 점에서¹⁶⁾ 박근식이 이를 거부하여 희생당했을 개연성이 없지 않으나 그의

12) 『참고인 김○○ 진술조서』(2010. 1. 26.); 『참고인 김○○ 진술녹취』(2010. 5. 18.)

13) 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 요약』, 1986. 282쪽;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제4권)』, 1971. 63쪽, 3사단은 9. 29. 육군본부 작전명령 제199호에 의거 22연대의 주력부대를 선두로 삼척을 탈환하였다.

14) 강원도 교육청에 인사기록을 조회한 결과 진실규명대상자 박근식의 재직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회신을 받았다. 진실화해위원회, 『경력사실 확인 협조요청(마-10506)』, 2010. 5. 17.(조사1팀-415); 강원도 교육청, 『경력사실 확인 회보』(마-10506), 2010. 5. 19.(총무과-6428)

15) 『신청인 윤순희 진술조서』(2010. 2. 22.)

16) 진실화해위원회, 『강원 남부지역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 제135차 전원위원회(2010. 6. 8.)

희생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참고인 및 한국전쟁 관련 명부 등의 자료에서 피해 내용을 찾을 수 없어 본 사건을 진실규명불능으로 판단하였다.

2. 진실규명대상자의 피해사실 확인 및 가해주체와 피해이유

진실규명대상자의 피해사실 여부는 피해자의 신원, 강제연행 시기와 장소 및 강제연행 이유 등 사건경위가 밝혀졌으면 문헌자료가 없어도 '확인'으로 판단하였다.

진실규명대상자의 피해사실 확인사항을 <표 4>에 정리하였고 가해주체 및 피해이유는 <표 5>에 정리하였다.

<표 4> 진실규명대상자의 피해사실 확인사항

사건번호 (신청인)	진실규명대상자				문헌자료		진술조사			피해 사실 확인 결과
	성명 (한자, 성별, 나이)	직업 및 주요 경력	신청인 과의 관계	피해일 및 피해장소	순국반공청년 명부 등 각종 명부	제적등본 (사망일, 사망장소)	신신 수습 여부	제사일 (음력)	진술자 (사건과 의 관계)	
마-6838(3) (강태웅, 김일 하, 이경일)	김수원 (金守源, 남, 21세)	농업	마을주민	1950.9. 말경 원덕면 용화리	×	미신고	×	×	김○○ 김○○ (전문)	강제 연행 확인

<표 5> 가해주체 및 피해이유

사건명(사건번호)	사건발생시기	피해자	가해주체	피해이유
삼척군 원덕면 용화리 김수원 강제연행 사건(마-6838(3))	1950.9. 말경	김수원	퇴각하던 인민군	인민군 짐꾼으로 끌려감

Ⅲ. 결론

신청인 및 참고인들의 진술과 문헌자료를 통해 신청사건을 조사한 결과 1950. 9. 말경 진실규명대상자 김수원이 인민군에게 강제연행된 사실을 확인하였고, 진실규명대상자 박근식이 빨치산에게 희생된 사실은 확인할 수 없었다.

- 진실규명대상자의 강제연행 확인: 김수원(金守源, 마-6838(3))
- 진실규명불능: 박근식(朴根植, 마-10506(2))

